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2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민형배·안도걸·문정복

어기구・정성호・이성윤

민병덕 · 정춘생 · 김선민

서왕진 · 황운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,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

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.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.7%입니다.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,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.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.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%인 31명 이상,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.2%인 20명 이상,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.4%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.

이에,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,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.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3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20명"을 각각 "10명"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간사 1명을 추가적으로 둔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교섭단체) ① 국회에 <u>20명</u>	제33조(교섭단체) ①10명		
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			
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			
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			
니하는 <u>20명</u> 이상의 의원으로	<u>10명</u>		
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			
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50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각 교	제50조(간사) ①		
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.			
<단서 신설>	다만,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		
	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		
	정당의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		
	여 간사 1명을 추가적으로 둔		
	<u>다.</u>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